

충남리포트 제82호 2013. 8. 9

대형마트 의무휴업, 그 후 1년: 일본 상점가정책의 시사점

이 민 정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연구원, minjoung1006@cdi.re.kr)

목 차

< 요약 >

1. 전통시장 동향
2.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의 변천 및 현황
3. 일본 상점가정책의 변천
4. 요약 및 시사점

〈요 약〉

- 1996년 유통시장자유화로 시작된 유통 근대화 속에서 전통시장은 전근대적 유통형태로 인식되었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업태 이노베이션 및 소비패턴의 다양화로 인해 전통시장은 급격히 축소되었음.
- 전통시장/중소영세상인 보호에 관한 정책이 추진되어, 2012년 1월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되어,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매월 2회의 의무휴업을 실시함. 그러나 동 법은 일시중지되었다가, 다시 법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이 재개되는 등, 제도적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
- 일본의 상점가도 보호적·조정적 정책지원을 통해 대규모유통자본에 대항해 고유의 영역을 구축해왔음. 정책은 “대형유통업태로부터 보호(50년대) → 시설 현대화를 통한 지원(60년대) → 외국계 대형점포로부터 보호(70년대)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상점가 역할 강조 및 이를 위한 지원(90년대) → 전반적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적 지원으로(2000년대 이후)”와 같이 변천되어 왔음. 큰 흐름은, 대형점포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경험 하에 지역 차원에서 상점가의 역할부여 및 지역 정비를 통해 상점가를 이용하기 편한 환경으로 정비하는 방향임. 지역의 자산을 개선(Renewal)하여 지역을 재생(Regeneration)시킨다는 근본적인 처방 안에서의 전통시장 활성화정책을 생각해야 함.
- 또한, 일본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점가지원의 방향으로 전환한 점으로부터, ‘골고루 지원’식의 지원책의 한계 노정과 금후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음.

1. 전통시장 동향

- 전통시장은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뿌리내린 장(場)으로 원스톱쇼핑과 저가격대 상품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로, 서민에게는 상품구매기회를 제공하고, 영세상인에게는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1990년경까지 백화점과 함께 소매업계의 큰 축으로 기능하였음.
- 1996년 유통시장 자유화에 따른 외자계 소매기업 진출, 국내 대기업의 소매 분야 진출, 무점포판매·SSM¹⁾ 등 새로운 소매업태의 급성장 등, 소매업계의 급격한 재편이 이루어짐
- 2000년대 들어 대형마트와 SSM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대도시 및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상권 확대.
- 반면, 전통시장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통시장의 침체는 규모의 영세화, 나아가 지역의 종사자수 감소로 이어짐.
- 충남의 전통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충남의 전통시장도 점포수 감소, 빈점포율 증가, 총시장상인수 감소 등 전통시장의 어려워진 상황을 알 수 있음. (표1 참조)

1) SSM(Super Supermarket):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개인업자가 운영하던 슈퍼마켓 시장에 진출하면서 생긴 중대형 슈퍼마켓을 이룸. 매장면적 330㎡이상 3,000㎡이하 규모 주거지역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좋고,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하므로 개인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갖추기 힘든 1차 신선식품 및 다양한 상품의 구비가 가능함.

○ <표 1>에서 충남도 전통시장의 매출액 증감상황은 알 수 없으나, 전국 일평균매출액의 감소상황과 <표 2>를 통해, 일평균매출액 분포가 매출규모가 낮은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부터, 충남도의 전통시장도 일평균매출액이 감소상황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표 1> 전통시장 추이

	항목	전국	충남
2005	총시장상인(명)	396,229	14,691
	중사자수(명)	331,131	10,919
	점포소유상인(%)	20.6	30.6
	점포임차상인(%)	43.6	44.7
	종업원(%)	35.8	24.7
	노점상(명)	65,098	3,772
	점포수(개)	239,200	8,190
	빈점포(개)	31,645	568
	시장당 일평균매출액(만원)	5,801	-
2012	총시장상인(명)	354,146	13,101
	중사자수(명)	298,140	9,498
	점포소유상인(%)	16.1	28.7
	점포임차상인(%)	44.2	48.9
	종업원(%)	39.7	22.4
	노점상(명)	56,006	3,603
	점포수(개)	204,237	8,045
	빈점포(개)	18,520	602
	시장당 일평균매출액(만원)	4,502	-
증감율 (%)	총시장상인	▲10.62	▲10.82
	중사자수	▲9.96	▲13.01
	점포소유상인(%p)	▲4.5	▲1.9
	점포임차상인(%p)	0.6	4.2
	종업원(%p)	0.9	▲2.3
	노점상	▲13.97	▲4.48
	점포수	▲14.62	▲1.77
	빈점포	▲41.48	5.99
	시장당 일평균매출액	▲22.39	-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상인 및 상인조직현황- 중사자수, 경영현황-일평균매출액, 점포현황-점포수, 각년도

주1: 총시장상인 = 중사자 + 노점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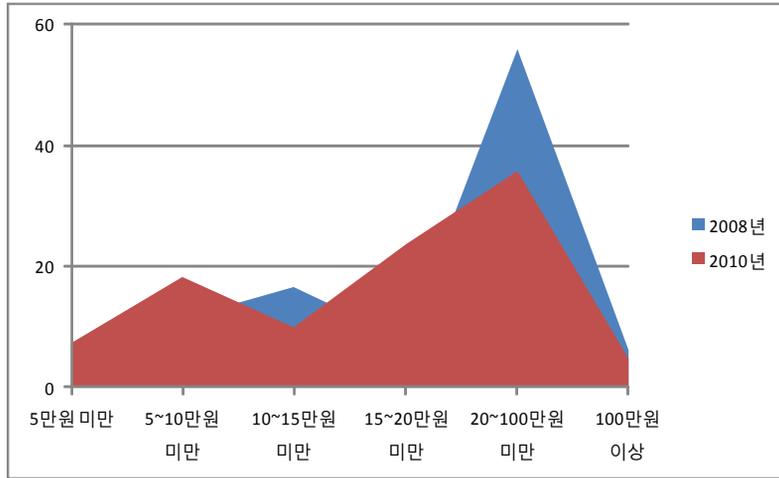
주2: 점포소유상인 = 점포소유상인 / 중사자

주3: 점포임차상인 = 점포임차상인 / 중사자

주4: 종업원(%) = 종업원 / 중사자

(종업원은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 무급종사자를 모두 포함)

〈표 2〉 충남 전통시장의 일평균매출액 규모별 분포



출처: 이민정(2012)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전통시장/중소영세상인 보호에 관한 정책이 추진되어,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됨. (준)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및 SSM)를 대상으로 매월 2, 4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실시.
- 동 개정으로,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이 시군구의 조례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일요일영업이 재개됨.
- 충남에서도 2012년 3월 천안시를 시작으로 도내 7개 지자체가 조례 마련·실행에 들어갔으나, 동년 7월 대형마트 및 SSM가 동 조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되었고, 8월부터 종전 방식으로 영업 재개.

-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일본의 상점가(商店街)에서는 상점가/중소 소매상을 위한 진흥정책이 보호·조정을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음.
- 이에, 일본 상점가진흥정책의 변천과정을 개괄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 함.

2.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의 변천 및 현황

- 전술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중소영세상인 보호에 관한 정책이 추진되어,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됨.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매월 2, 4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실시하여, 동 개정으로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이 시군구의 조례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동 규제는 무효화됨²⁾.
- 충남에서도 2012년 3월 천안시를 시작으로 도내 7개 지자체가 조례 마련·실행에 들어갔으나, 동년 7월 대형마트 및 SSM가 동 조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되었고, 동년 8월부터 종전 방식으로 영업 재개.

2) 유통산업발전법(제3장 12조2)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 “할 수 있다”는 권조항으로 명시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명시한 것이 논란의 발단임.

- 2013년 1월 개정된 유통사업발전법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조항(제3장 12조2) 내용을 수정하여, 의무휴업을 '권고'에서 '강제'화함.(4월 24일부터 시행)
- 이제 논점은, 의무휴업에 대한 법적 절차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자체에 대한 효과를 둘러싼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

〈표 3〉 대형마트 영업규제관련 조례제정 실태

자치구	미발의		미상정 (개정안 발의)	심의중 (상정예정)	의결	공포
	개정검토	입법예고 (진행 또는 완료)				
서울(25)	22	3	-	-	-	-
부산(16)	16	-	-	-	-	-
인천(8)	6	-	-	1	-	1
대구(8)	7	-	-	-	1	-
광주(5)	-	-	-	-	-	5
대전(5)	5	-	-	-	-	-
울산(5)	3	1	-	-	-	1
경기(30)	23	5	1	-	1	-
충남(13)	12	-	-	1(아산시)	-	-
충북(6)	4	1	-	-	-	1
경북(13)	13	-	-	-	-	-
경남(13)	7	6	-	-	-	1
전북(7)	6	-	-	-	-	1
전남(13)	11	1	-	-	-	1
강원(11)	5	1	4	1	-	-
제주(1)	-	-	-	-	-	1
합계(179)	140(78%)	18(10%)	5(3%)	3(2%)	2(1%)	11(6%)

출처: 소상공인신문 2013년 7월 21일 기사

-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찬반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의무휴업이 중소소매업 및 전통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으로는,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이 조사·발표한 내용을 들 수 있음. 동 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이 아니었던 날(4월 21일)에 비해 의무휴업일이었던 날(4월 28일)의 경우, 전통시장의 평균매출이 11.1%, 평균고객은 11.3% 증가³⁾.

- 동 제도에 회의적인 입장에서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이전에 세일·판촉행사 등의 마케팅전략을 통한 고객유인활동 및 고객의 온라인 매장이용 등을 이유로 들고 있음. 한 조사에서⁴⁾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찾는 대(19.6%)’와 대조적으로 ‘휴업전날 대형마트에 간다(41.6%)’의 높은 응답률을 비교하면 동 제도의 반사이익이 미미함을 지적.
- 제도 안착에 대한 기대와 제도 효과자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적인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의무휴업 방안이 등장⁵⁾.
- 충남에서는 보령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1, 3주 금요일)로 지정·시행 중임.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와 대형마트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결정. 2회 모두 평일휴업은 전국에서도 유일한 사례임.⁶⁾
- 동 시는 매월 2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전통시장 이용하는 날’로 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

3) 대형마트 및 SSM 주변 전통시장 내 점포 1000개를 대상.(아시아투데이 2013. 5. 16일자)

4) 한국경제신문 조사.(2013.4.21일 기사)

5)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제3장 12조2)에서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 매월 이틀’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가능하다는 내용에 근거함

6) 뉴시스(2013년7월6일 기사). 보령시에서는 2012년에도 2,4주 금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실행하였던 전례가 있음.

- 그러나, 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가 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하겠다는 의견에 대한 거래대가로 판촉물품, 현금, 용역서비스 제공, 발전기금 등 전통시장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례도 등장.
- 예를 들어, 대전지역에서는 일부 대형마트들이 현재의 2, 4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평일(수요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⁷⁾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합의없이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통시장 측에서 강하게 반발.
- 道는 기본적으로 '골목상권 보호'라는 입장 하에 각종 조례 및 지원을 시행 중⁸⁾. 정책방향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직접적 규제내용의 조례를 비롯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간접적 규제 조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1) 대형마트 및 SSM 입점제한 조례개정 등 조기완료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 (현행) 500m 이내→ (확대) 1km 이내 조례개정 추진

2)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확대

권역별로 중소유통센터 건립 : 2개소 3개소 확대

(‘11) 예산지역, (‘12) 천안지역→ (‘14) 서산지역 추가건립

3) SSM 등의 입지제한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슈퍼마켓 수준(1천㎡ 미만)으로 건축가능 면적을 축소토록 「도시계획조례」 개정

7) 충청투데이(2013년 3월 25일 기사)

8) 충남도청HP(FTA대응 일반경제분야) 발췌

- 4) 유통업 현대화 구조개선을 위한 금융지원
 - ① 유통업구조개선 자금지원
 - ② 특례신용보증 공급
 - 5) 전통시장 소액대출 추진
 - 6) 금융소외계층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 ① 영세소상인 자금지원
 - ② 저신용등급 자영업자 「햇살론」 대출
 - 7) 영세소매업의 「나들가게」 설치 지원
- 전술과 같은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조정정책 및 이에 따른 갈등을, 우리나라보다 유통 이노베이션이 먼저 일어났던 일본은 1950년대부터 이미 경험해 오고 있으며, 상점가는 보호적·조정적 정책지원을 받으며 대규모 유통자본에 대해 고유의 영역을 구축해왔음.
- 이에 일본의 정책변천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전통시장 활성화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됨.

3. 일본 상점가정책의 변천⁹⁾

- 일본의 중소소매상/상점가에 관한 진흥정책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업태 이노베이션에 대한 중소소매상/상점가의 보호·조정정책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음.
- ‘경쟁력이 약한 중소소매상을 조직화하고, 공동사업전개를 지원함으로써 백화점에 대항할 힘을 기른다’는 진흥정책의 원형이 1930년대에 이미 확립.
- 1950년대 초반에 등장한 GMS¹⁰⁾는 중소소매상/상점가에게 큰 위협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상점가의 조직화 및 고도화사업에 큰 영향을 끼쳤음.
- 1950년대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가 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대형마트의 등장과 급성장에 대한 전통시장의 위기에 대해,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매우 흡사함.
- 1960년대에는 유통기능 생산성 향상 및 유통활동의 기능고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되어, 그 방법으로 중소소매업의 근대화 논의가 활발히 일어남. 1960년대에는 상점가정책은 보호정책에서 근대화정책으로 방향을 틀었고, 시설정비, 공동화사업 지원, 중소소매상의 체인화 사업 지원 등의 방법이 논의됨.

9) 동 부분은 이민정(2012)을 준용 및 가필.

10) GMS(General Merchandise Store): 우리나라의 대형마트와 유사한 소매업태. 식료품, 일용품뿐만이 아닌, 의약품, 가전, 가구 등, 다양한 상품을 종합적으로 구비함. 대표적 업체로 AEON, ITOYOKADO, DAIE 등이 있음.

- 1970년대에는 자본자유화로 외자계 소매기업이 일본에 진출하였고, 이는 유통 근대화정책 중 중소소매상/상점가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유인(Incentive)으로 작용함. 대표적으로 1973년에 제정된 「중소소매상업 진흥법」, 「대규모소매점포법」을 들 수 있음. 중소기업의 ‘고도화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와, 대규모점포의 사업활동(출점, 휴무일, 점포면적, 영업시간, 휴업일수)을 조정·규제하는 후자가 동시에 제정된 당시 상황은, 지금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추진을 통해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을 떠올리게 함.

- 그러나 「대규모소매점포법」으로 대형마트 출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동했으나, 상점가의 쇠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음. 이에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이 논의되어, 「80년대 유통산업비전」(1983년)에서 지역사회의 소매업 역할이 강조됨과 함께, 상점가와 같은 전통있는 상업집적은 지역문화와 지역사회의 자산이며 일꾼이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함. 그 내용은
 - ① 지역주민의 기초적 생활니즈(needs)에는 근린형 상점가 등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상점가는 인간적 교류를 중시한 매력있는 상점가 만들기, 개별점포 레벨의 전문점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
 - ② 아케이드, 도로의 칼라포장, 각종 이벤트 등 하드/소프트 양면의 정비와 더불어, 전문점·대형점의 상점가 입지유치 등 매력있는 상점가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요구됨.
 - ③ 도시상업문화 창조도 상점가의 큰 역할임을 인식.
 - ④ 지역상업계획을 활용한 지역사회 전체와의 조화를 도모 등이 제시됨.

- 특히 ①의 '기초적 생활니즈'에 대한 대응을 '생활인프라'로 인식하여, 상업정책과 도시정책과의 연계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점이 흥미로움. 상점가의 기능을 단순한 구매공간으로써의 그것을 넘어 주민 교류의 장으로써의 기능까지 포함했는데, 이는 단순한 의미 확장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기능을 '분절'하여 생각했던 기존의 틀에서 '종합-연계'라는 새로운 틀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대규모소매점포법」의 단계적 완화, 미일구조협약(1990년)의 대외관계 하에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정부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중소소매상/상점가의 상황은 더욱 힘들어짐.
- 1990년대에는 상점가를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립하여, 상점가의 소프트사업과 의욕있는 개별점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제시됨. 키워드는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임.
- 1990년대에는 중소소매상/상점가 진흥정책 기조에 변화가 일어남. 그 변화는 「중소기업기본법」(1999년)에서 볼 수 있는데, 중심내용은 '자조노력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임. 즉, '마을만들기'가 「대규모소매점포법」의 정책목적과 모든 중소소매상/상점가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한 방향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방향을 변경한 것을 읽을 수 있음.
- 2000년대의 가장 특기할만한 정책은 「마을만들기3법(まちづくり三法)」(1998년~2000년)의 제정 및 「개정 마을만들기3법」(2006년)임.

-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도시계획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3법」은 지원과 규제로 구성됨. 종래의 '중소소매상/상점가를 위한 진흥정책'이라는 협의에서 범위를 넓혀 「지역」차원의 시책전개를 시도함.
- 즉,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의 상업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지역분권이라는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주체성과 이니시어티브 발휘를 가능케 하자는 목적의 제도설계임.
- 그러나, 동법은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 그 이유로, 교외개발규제가 유효하게 작용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는데, 이에 2006년의 개정(개정 마을만들기 3법)을 통해 무질서한 교외개발 규제(「도시계획법」개정) 및 콤팩트 시티의 실현(「중심시가지활성화법」)이 제시됨.
- 동 개정에서는, 기존자원의 유효활용과 재이용을 중시하고, 생활과 경제활동의 장(場)으로써 도시의 사회적 기능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정책목적을 읽을 수 있음.
- 2009년에는 「지역상점가활성화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응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동법의 목적은 상점가가 '지역 커뮤니티의 일꾼'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리 제고를 위해 시도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일체화된 커뮤니티 만들기를 촉진하여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것임. 더불어 상점가의 인재육성대책 강화도 목적으로 함.

- 동법에서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소프트사업과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보조율 향상, 세제우대, 융자제도 신설 및 전국상점가지원센터의 활동지원을 통해 교육 및 노하우를 제공·보급.
- 상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인증에 통과해야 함. 각 지역의 경제산업국에서 상점가활성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인증을 받은 인증계획에 근거한 사업에 대해서만 상기 지원이 이루어짐. 2012년 4월 현재 총 22건의 계획이 인증에 통과됨. 상점가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보조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보조금 이외 비용을 매칭 가능한 상점가가 현실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매칭금액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모색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됨. 즉, 상점가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보급이 과제임. 여기에는 상점가층의 노력이 전제됨과 함께 상점가지원센터 등 신설조직의 역할이 중요.
-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일본의 상점가정책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보호(50년대) → 시설현대화를 통한 지원(60년대) → 외국계 대형점포로부터 보호(70년대)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상점가 역할 강조 및 이를 위한 지원(90년대) → 전반적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적 지원(2000년대 이후)”으로 변천해 옴을 알 수 있음.
- 일본에서는 상점가정책이 60년 이상에 걸쳐 정비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6년 유통자유화 이후 채 2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대응해야 했음. 이에 상기 정책변천의 모습이 함축적·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일본은 대형점포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경험 하에 지역차원에서 상점가의 역할부여 및 지역 정비를 통해 상점가를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즉, 지역 내의 상업기능은 지역의 여타 기능과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있고, 그 관계가 강해질수록 각각의 부문들이 더욱 유효하게 기능한다는 것임.
- 중요한 것은 상점가(전통시장)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임. 어느 산업을 불문하고 정책적 보조제도에만 의지해 성장한 산업은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보조대상의 선별 자체도 점차 엄격해지지만, 보조제도가 없어져도 자립적으로 성장·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양국의 상업집적(전통시장·상점가)에 있어 공통의 과제임.

4. 요약 및 시사점

- 제조업 수출중심의 국가성장노선을 채택했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유통부문이 늦게 발전하였고, 1990년대 유통시장자유화로 시작된 유통부문 근대화 속에서 전통시장은 ‘전근대적’ 유통형태로 인식되었음.
- 일본의 중소소매상/상점가 진흥정책은 중소소매상/상점가와 대형유통자본 간의 격차를 조정하는 정책에서, 지역 내의 상업기능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재편되어 온 흐름을 읽을 수 있음.
- 1950년대부터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를 통해 유통대자본과 중소소매상/상점가 간의 격차를 조정해 온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법제도 정비와 기타 상황을 조정해야하는 상황에 있음.
- 우리나라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정비는 일본의 그것과 상당부분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12년 1월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점포 의무휴업” 조례제정을 추진한 것은 일본이 1970년대에 취해왔던 조정정책과 흡사함.
- 하지만, 일본이 진흥정책을 실시하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50여년이 지나서 깨달은 바는 지역 내의 상업기능은 지역의 여타 기능과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있고, 그 관계가 강해질수록 각각의 부문들이 더욱 유효하게 기능한다는 것임

- 전통시장 활성화 논의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유통대 자본과 전통시장의 관계에서 약자인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당위적 의미가 아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지역」, 「커뮤니티」의 의미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통시장의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임.
- 계속되는 업태 이노베이션 및 소비패턴의 다양화 등을 생각할 때,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제정 추진과 같은 직접적 조정정책은 곧 한계를 노정할 것이라 생각됨. 특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걸쳐 다양한 소매업태가 존재하는 오늘날에, 이와 같은 ‘직접처방’은 치료가능범위가 더욱 더 제한되고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음.
- 지역의 자산을 개선(Renewal)하여 지역을 재생(Regeneration)시키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성이 다시금 요구됨.
- 더불어 일본이 ‘모든 상점가를 끌고루 지원’하는 것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엄선된 상점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부터, 전통시장 또한 자발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해 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이 민 정(Ph.D), minjoung1006@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연구원
Tel. 041-840-1172

◆ 참고 자료 ◆

충남도청HP 및 정보통계관HP(<http://www.chungnam.net/cms/stats/index.htm>)

시장경영진흥원(2010) 정기시장활성화방안연구

이민정(2012)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관한 일고찰” 『충남경제』 2013년3월호

소상공인신문 (<http://www.sbnews.or.kr>)

아시아투데이(<http://www.asiatoday.co.kr>)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渡辺達朗 (2003) 『流通政策入門—流通システムの再編と政策展開—』 中央経済社

鈴木安昭 (2006) 『新・流通と商業 (第4版)』 有斐閣

충남리포트 발간리스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종문·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도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권영현	2010. 4. 5
2010-06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윤정미	2010. 6.21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0-11	충남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군의 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년 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이선호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충훈	2011.03.31
2011-04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	사공정희	2011.04.21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임준홍 외3명	2011.05.02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진·김영일	2011.06.23
2011-07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	성태규외	2011.06.30
2011-08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1.07.11
2011-09	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	정옥식	2011.07.27
2011-10	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2011.08.22
2011-11	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 연구	김양중	2011.10.31
2011-12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지정책의 개선방안	홍성호	2011.11.30
2011-1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	이인희	2011.12.29
2012-01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종수	2012.01.31
2012-02	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	신동호	2012.02.13
2012-03	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4	2012년 충남 GRDP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5	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임형빈	2012.03.12
2012-06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송두범·김종수	2012.04.02
2012-07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김영일	2012.05.31
2012-08	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분석	조영재	2012.06.21
2012-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	전영도·백운성외	2012.08.10
2012-10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허남혁·정준	2012.08.16
2012-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윤정미	2012.09.20
2012-12	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	정옥식	2012.10.31
2012-13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통한 도심녹지체계 확보	사공정희	2012.11.28
2012-14	한·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양중	2012.12.12
2013-01	충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특성분석과 정책수요 도출	홍성호 외	2013.02.21
2013-02	2013년 충남 수출 및 GRDP 전망	김양중	2013.03.07
2013-03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과제	송두범 외	2013.04.19
2013-04	에코유지엄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 방안	여형범	2013.04.29
2013-05	충남지역 귀농·귀촌 실태 비교 연구	유학열	2013.05.10
2013-06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강마야·여민수	2013.07.10
2013-07	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허남혁 외2명	2013.07.18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공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